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



[시행 2025. 2. 24.] [국무조정실훈령 제218호, 2025. 2. 24., 일부개정]

국무조정실(기획총괄국), 044-200-1918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

- 제2조(위원의 윤리 의무) 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·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.
 - 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·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제3조(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)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비밀의 유지) 위원장, 위원, 회의 참석자는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법 제15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(이하 "당연직위원"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(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)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.

- 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대행)**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분과위원장"이라 한다)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위임) 위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총괄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. 다만,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8조(국민소통) ① 위원회는 관계전문가나 국민,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, 컨퍼런스, 설문조사,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참여를 지원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산업계, 지자체, 청년,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협의체 및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

- 제9조(분과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기후변화 정책 분과위원회
 - 가.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
 - 나. 배출권거래제 등 총괄 온실가스 감축 정책
 - 다. 건물・수송・폐기물・흡수원・농축수산 분야 온실 가스 감축 정책 등
 - 라. 기후예측, 기후위기 적응(기후변화에 따른 영향, 위험,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 등) 대응 및 정책 수립 지원·조정
 - 마. 국제협력, 실천교육, 홍보 · 소통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검토
 - 2. 녹색성장·산업전환 분과위원회
 - 가. 녹색 경제, 녹색산업 육성ㆍ지원
 - 나. 녹색기술 R&D 관련 국가전략 수립 지원
 - 다. 산업 부문 국가 정책ㆍ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ㆍ경로 설정
 - 라. 기후위기 대응 금융 관련 조정ㆍ지원
 - 마. 국제감축(감축량, 감축경로 설정, 사업 활성화, 국내 추진 기반 조성, 추진체계, 국가 간 협력 등)
 - 3. 에너지・공정전환 분과위원회

- 가.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 계획 수립 지원 조정
- 나. 전환・수소 온실가스 감축목표・경로 설정
- 다. 시ㆍ도,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지원ㆍ대응ㆍ조정
- 라.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ㆍ지원
-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,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에 따라 참여할 당연직위원을 확정한다.
-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참여하는 당연직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촉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분과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은 해당 분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.
- 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
-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.
- 제10조(분과위원회의 회의) ① 분과위원회 회의 시 당연직위원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- 제11조(특별위원회)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 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- ③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- 제12조(총괄기획위원회) 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두고,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
 - 2.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
 - 3.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의결
 - 4. 그 밖에 위원장이 총괄기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이 된다.
 - ③ 총괄기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 - 1. 분과위원장
 - 2. 분과위원회의 간사위원

- 3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중 총괄기획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사람
- ④ 총괄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, 간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총괄기획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.
- ⑤ 총괄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3조(전문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,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(이하 "전문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(이하 "전문위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 - ② 전문위원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1명 이상 참여하고, 전문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③ 전문위원은 기후과학, 온실가스 감축,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, 에너지·자원, 녹색기술·녹색산업,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⑤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⑥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⑦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⑧ 전문위원회의 목적 달성, 중대한 사정 변경 등 전문위원회의 운영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전문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고, 전문위원회가 폐지되면 소속 전문위원은 해촉된다.
- 제14조(위원회 회의 운영의 준용) 분과위원회,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소집, 개의,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5조(그 밖의 세부사항)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218호,2025.2.24.>

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